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782 제출연월일 : 2023. 11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기능 중 혼동될 수 있는 조항 구체화 (안 제2조제2호) 나.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 변경(안 제2조제5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7.25. ~ 2023.8.16.(22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

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자치단체가"를 "시가"로, "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 "지역 축제 등"이라 한다)중 3천명"을 "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 "지역축제 등"이라 한다) 중 1천명"으로, "등에대한 재해대처계획"을 "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"으로 한다.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5조에 따른 하남시(이하 "시"라한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"하남시"를 각각 "시"로 한다. 제6조의2제3항 중 "담당 실·국·소장"을 "담당국장"으로, "하남시"를 "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개의"를 "개의(開議)"로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"재해대처계획"을 각각 "안전관리계

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실무위원회"를 "실무조정위원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"등"을 "등의 안전관리계획"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안전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안전정책과장 염규진
	팀장	안전기획팀장
	직위·성명	이희종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최윤정 031-790-5053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안전관리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제2조(위원회의 기능)
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.	
1. (생략)	l. (현행과 같음)
2.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제25조에 따른 하남시(이
	하 "시"라 한다)의 재난 및
	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
	<u>관한 사항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자치단체가</u> 주관하여 시행하	5. 시가
는 <u>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</u>	지역축제·공연·행사(이하
하 "지역 축제 등" 이라 한다)	"지역축제 등"이라 한다) 중
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	<u> 1천명</u>
되는 지역축제 등에대한 재해	등에 대한 안전관리계
<u>대처계획</u> 의 심의	<u>획</u>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
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	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	
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은 다	
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다만,	
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	
구성하되 「양성평등기본법」	
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하남시</u> 관할 구역안에 있는	4. <u>시</u>
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	
5. <u>하남시</u> 관할 구역안에 있는	5. <u>시</u>
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	
· 단체의 장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	제6조의2(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
회) ① · ② (생 략)	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	③
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	
난 및 안전관리 <u>담당 실·국·</u>	<u>담당국장</u>
<u>소장</u> 이 되며, 위원은 <u>하남시</u> 소	<u>\(\)</u>
속 부서장 중 부시장이 지명하	
는 사람이 된다.	
④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	4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	<u>개의(開議)</u> -
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	
로 의결한다.	
⑤ · 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	제7조(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	②
음과 같다.	

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제2조제5호의 <u>재해대처계획</u> 등 실무위원회의 심의로써 위원회의 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
- 4.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축제 등으로써 시장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 해대처계획의 심의
- ③ (생략)
-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<u>실</u> 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 등(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1. (U 07) E U/
3 <u>안전관리계획</u>
4
안전관리계획
_
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실무</u>
조정위원회

⑤
(5)
등의 안전관
리계획
<u> </u>

1 . 9 (청해고 간으)

관계법령 발췌서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약칭 : 재난안전법 시행령)

[시행 2023. 1. 5.] [대통령령 제33198호, 2023. 1. 3., 타법개정]

제73조의9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"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. 〈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〉

- 1.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
- 2.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
 - 가.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
 - 나. 불, 폭죽,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
-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(이하 "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18. 1. 18., 2020. 6. 2.〉
- 1. 지역축제의 개요
- 2. 축제 장소·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
- 3.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- 4.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
- 5. 비상시 대응요령,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
-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 〈개정 2020. 6. 2.〉
-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. 〈신설 2020. 6. 2.〉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·관리될 수

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〉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 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6. 2.>

[본조신설 2014. 2. 5.]